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. 7. 21(목) 10:00

####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# 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97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2. 7. 13.

#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이 2020. 12. 20. 개정, 2021. 1. 1.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용어 및 관리기준을 보완·개선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'정액보조금'을 '운영에 필요한 보조금'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,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8조부터 제12조)
- 나.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 법규를 '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'로 변경함(안 제16조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 |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 화원진흥법 | (이하 "법" 이라 | 화원진흥법 | 제3조제1항 및 제 19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 한다) 제3조제1항 및 제19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3조의 규 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문화원을 정에 의거 금천문화원 (이하 |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"문화원"이라 한다)을 지원·육|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.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문화원 지원 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금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천문화원(이하 "문화원"이라 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 제3조(기금의 출연 및 조성) ① 제3조(기금의 출연 및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② 문화원장은「지방문화원진」 흥법 |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·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 ·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 전 및 그 밖의 -----전 · 기타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 제4조(국・공유재산의 사용) ① | 제4조(국・공유재산의 사용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·

공유 재산에 <u>대해</u>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)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~ 7. (생략)
  - 8. <u>기타</u>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- 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생략)
  -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· 2. (생략)
  - 3. <u>기타</u>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 요한 사항
- 제8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(생략)
  -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 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
<u><신</u> 설>

<u>대하여</u>
제5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)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그 밖에</u>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그 밖에</u>
제8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운영에 필요한 보조금
<u>.</u>
③ 보조금 지원 등 그 밖에 필
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
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
따른다.

- 제9조(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) 지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, 구 정액보조금,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수 있다.
  - ② <u>사업별로 보조금</u>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~ 5. (생략)
- 제10조(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) 지 ① (생 략)
  -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<u>각호</u>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<u>당해</u>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-
- 제11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구청장 지 은 <u>정액보조금을 매월</u> 초에 균 등하게 교부하고, 사업별 보조 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<u>월초</u>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<u>정액 또는 사업별</u>	② <u>보조금</u>
<u>보조금</u> 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	
미리 교부금액, 교부방법, 교부	
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	
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	
다.	<b>.</b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업별 보조금의 정산) ①	제12조(보조금의 정산) ①
문화원장은 <u>사업별 보조금</u> 을 교	<u>보조금</u>
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	
료된 <u>다음 달</u> 에 사업실적과 정	<u>후 30일 이내</u>
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문화원장은 <u>사업별로 지원받</u>	② <u>지원받은</u>
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	
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	
반납하여야 한다.	
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・② (생	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	3
이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	
외로 사용 되었거나 <u>기타</u> 부정	<u>그</u> 밖에
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	
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구	제15조(사무의 검사・감독) ①
	l .

청장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 ---

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 등의

규정에 <u>의거</u>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·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 다.

#### ②・③ (생략)

제16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 전출) 문화원장은 매 <u>회계연도마</u> 다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따라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
출) 회계연도마
다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
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7
조제1항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19조
- 2)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 용어 및 관리기준을 보완·개선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-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'정액보조금'을 '운영에 필요한 보조금' 으로 변경하고,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리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6조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인용법규를 변경하고, 그 이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.
-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, 향후 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화사업의 다각화 및 지역문화를 건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,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수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관련 법령 1부.

# 관계 법 령

####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<전문개정 2007. 12. 21.>

####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

제3조(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리고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-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- 1.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
- 2.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3.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<본조신설 2020. 12. 22.>

### 현 행 조 례

####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1. 1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801호, 2020. 12. 31., 제정]

제7조(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
- 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·지출 결산서
- 3.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
- 4.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
-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・육성에 관한 조례」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홍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및 제19조, 「문화예술진홍법」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문화원 (이하 "문화원"이라 한다)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3조(기금의 출연 및 조성) ①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문화원을 지원·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원장은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·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·기타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- 제4조(국·공유재산의 사용)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·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제5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)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- 2.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- 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- 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및 보급
- 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·외 교류
- 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- 7.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- 8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- 제6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.
  - ② 기금은「은행법」,「농업협동조합법」,「신용협동조합법」,「새마을금고법」,「상호 저축은행법」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%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한다.
- 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
  - 2.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
  - 3. 기타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문화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 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- 제9조(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)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, 구 정액보조금,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.
  - 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
  - 2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
  - 3.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
  - 4. 보조사업의 효과
  - 5.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
- 제10조(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)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1. 법령과 조례,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
- 2.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
- 3.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
- 4.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
-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제11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구청장은 정액보조금을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,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, 교부 방법,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.
  -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2조(사업별 보조금의 정산)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보조금의 교부중지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법령,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
  - 2.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, 또는 중단하였을 때
  - 3.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
  - 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회계관리 등)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  - ④ 기금, 보조금,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- 제15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구청장은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

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서 장부·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제572호, 2009.04.0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